

『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4월 3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5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5월 13일

제17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유 영 명

나. 제안이유

- 2013년 1월 1일 「지방세법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내용의 반영 및 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「지방세법」 개정에 따라 “과세특례”를 “재산세 도시지역분”으로 용어변경(안 제14조 및 제15조)
-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대상 기준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(안 제16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세법」 제122조 및 제115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대 회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「지방세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임.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안 제14조 및 제15조의 “과세특례”를 “재산세 도시지역분”으로 명칭을 개정하여, 사용하는 취지에 맞도록 용어를 정리하고,
- 안 제16조 중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대상 기준을 “5만원 이하”에서 “10만원 이하”로 상향 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 하고자 하는 내용임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「지방세법」 개정에 따라 “과세특례”의 명칭을 “재산세 도시지역분”으로 바꾸고,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 부과기준을 “5만원 이하”에서 “10만원 이하”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, 납세자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